선거관리 규정<개정 2019.2.22.>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34조에 따라 임원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선거원칙) 선거는 직접, 보통, 비밀, 평등의 원칙에 의한다.

제3조(적용) 노동조합의 모든 선거는 본 규정에 의하여 진행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.

제4조(용어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사고자라 함은 공무출장, 연가를 제외한 휴가(병가, 공가, 청가, 특별휴가, 출산전후휴가), 휴직자를 말한다.
- 2. 총선거권자라 함은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원을 말한다.

제2장 선거관리위원회

제5조(구성)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9.2.22.>

- ②<삭제 2019.2.22.>
- ③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.

제6조(권한)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.

- 1. 선거일 확정 및 공고
- 2. 선거인 명부작성 및 확정 공고
- 3. 입후보자 등록 공고
- 4. 입후보자 등록 접수
- 5. 입후보자 자격 심사 및 확정 공고
- 6. 입후보자 사퇴 수리
- 7. 부정선거 방지 , 투표장 질서유지를 위한 감시 및 감독
- 8. 투개표에 관한 사항(사전투표, 전자투표 등 포함)<개정 2019.2.22.>
- 9. 당선자 확정 및 공고
- 10. 부정선거운동의 확정 및 제재
- 11. 선거무효, 당선무효 등 선거 결과에 대한 결정
- 12.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

②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모든 선거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, 위원 2/3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워칙으로 한다.

③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은 본 규정 및 공직자선거법에 반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.

제7조(자격상실 등) 선거관리위원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 임무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을 위반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통하여 자격을 상실한다.

제3장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

제8조(선거일)

-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70일,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. 단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로 한다.
- ②기타 사유로 인한 선거일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.

제9조(선거권)

조합규약 제7조에 의하여 조합원인 자는 선거권이 있다. 선거인명부 작성도 이에 준한다.

제10조(피선거권)

선거일 현재 본 대학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조합원으로서 조합에서 징계 또는 제명처분을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. 다만, 조합규약 제20조, 제23조, 제25조, 제27조에 의한 대의원, 위원(회계감사위원, 선거관리위원), 임원은 입후보할 시 입후보자 등록 공고 기간 내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등록) 위원장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입후보등록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.

- 1. 후보자 등록원서(소정양식) 1부
- 2. 추 천 서(소정양식) 1통

추천인원은 조합원 30인 이상 40인 이내로 한다. 다만, 이중 추천은 금지한다.<개정 2019.2.22.>

- 3. 입후보 취지서
- 4. 조합규약 제20조, 제23조, 제25조, 제27조에 의한 대의원, 위원, 임원의 경우 사퇴서 1부 (다만, 위원장 제외)

제12조(자격심사 등)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후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후보자 자격을 부여한다. 다만,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후보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②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간의 추첨 또는 합의로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.

③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기호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공고한다.

제13조(선거공보 등)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14조의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발행 및 배부한다.

- ②선거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- 1. 후보자의 사진
- 2. 후보자의 성명, 연령, 경력 및 입후보 취지 <개정 2019.2.22.>
- ③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.
- 1. 서울 및 ERICA캠퍼스별로 각 1회 이상
- 2. 후보자 연설 및 질의응답 또는 토론회
- 3.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 등 이외의 자유로운 내용
- 4. 위 1. 2의 실시 시기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4조(선거운동) ①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기호가 공고된 후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로 한다. ②선거운동원은 후보자가 선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23조, 제25조, 제27조에 의하여 대의원, 위원, 임원의 경우 사퇴서를 선거운동 시작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
- ③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- 1. 중상모략, 인신공격
- 2. 금품수수, 향응제공
- 3. 선거관리방해
- 4.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하게 저해하는 행위
- ④후보자 개인 유인물의 종과 발행횟수 등은 후보자간의 합의에 의한다. 다만, 단선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15조(투표 및 개표) ①투표는 선거일 당일 17시까지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9.2.22.>

-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가 요청할 경우, 후보자가 지명한 참관인 약간 명을 투·개표 과정에 참관시킬 수 있다.
- ③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수를 확인하여 총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진 경우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를 진행한다. 다만,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무효를 선언한다.
- ④개표 진행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표로 한다
- 1.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한 것
- 2. 이중으로 기표된 것
- 3. 백지투표지
- 4 지정된 기표 도구외의 것으로 표기된 것
- 5.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날인이 되지 않은 투표용지

제16조(당선확정)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된 후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 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. 다만,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 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.

-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단일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 자를 확정한다.
- ③당선자확정 이후 당해 선거의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선거후 10일내까지 투표용지를 보 관한다.

제17조(재선거 및 재투표) 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고자를 제외한 총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거무효를 선언한 경우에는 선거무효를 선언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. 다만, 재선거의 선거진행은 제8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.

②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선투표를 결정한 경우에는 선거일 익일에 재투표를 실시하고, 재투표의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. 다만, 재투표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없다.

제18조(이의제기) 선거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.

제19조(부정선거처리)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또는 본 규정에 위배,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에 따라 다음의 의결을 하고 이를 즉시 권고하여야 한다.

- 1.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간 합의 미이행, 유언비언(온라인 포함) 유포 및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주의 조치
- 2. 선거운동 기간 주의 2회 누적, '주의' 와 '후보자 자격박탈' 사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
- 3. 선거운동 기간 경고 2회 누적, 심각한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후보자자 격박탈 조치
- 4. 당선자 확정 후 제18조의 이의제기 등을 통하여 당선자 확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 인지되는 경우에는 당선무효 조치
- 5. 당선자 확정 후 제18조의 이의제기 등를 통하여 선거업무 진행 등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인지되는 경우에는 선거무효 조치
- ②전항의 의결 및 권고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1. 주의 및 경고조치는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의결
- 2. 후보자 자격박탈은 선거관리위원 2/3이상의 의결
- 3.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의결

제20조(보궐선거) <개정 2019.2.22.>

① 위원장 및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 또는 불신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발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다만 사유의 확정이 1개월 이상 시일소요가

예상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절차를 진행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 단,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21조(후보자 선거운동 지원비) ① 후보자가 5% 이상 득표 하였을 경우, 보조금 50만원을 선거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.

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원비의 사용처를 지정하되 각 후보자의 선 거활동 기밀 보장을 위해 별도의 세부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. <신설 2021.09.16.>

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1993년 6월 16일부터 적용한다.

- ① 1989. 6. 22. 제정
- ② 1993. 6. 21. 개정
- ③ 2001. 6. 1. 개정(선거관리규정 11조 2항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개정 통과)
- ④ 2005. 10. 13. 개정
- ⑤ 2014. 9. 17. 전부개정
- ⑥ 2019. 2. 22. 개정
- ⑦ 2021. 9. 16. 개정

제2조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3조 (경과규정)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19대 위원장 선출은 2019년 5월 29일로 한다.